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74회 임시회(2025. 3. 24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복지도시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5-19
----------	-------

2025. 3. 24.  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안경위

- 가. 제안자 : 고병준 의원 외 6인
- 나. 제안일 : 2025. 3. 10.
- 다. 회부일 : 2025. 3. 11.

2. 제안이유

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폐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정의를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6호 상위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 근거 법령 폐지에 따른 적용법령 수정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기타

1) 입법예고 : 2025. 2. 26 ~ 2025. 3. 4. (의견 없음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2020년 4월 2일 폐지되고,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 관련 업무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해당 사항이 「대기환경보전법」으로 이관된 점을 반영한 것임.
- 당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폐지된 상황에서 현행 적용법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령의 구조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.

## [관 계 법 령]

### 「대기환경보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6. “저공해자동차”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  - 가.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
  - 나.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